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80,363,000	29,410,890
일반회계	963,015,000	28,890,450
특별회계	17,348,000	520,440
기타특별회계	17,348,000	520,440
의료보호기금사업	2,328,000	69,84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651,000	19,53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493,000	134,79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자기금	1,006,000	30,180
주택사업	207,000	6,2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00	30
주차장설치사업	606,000	18,18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35,000	4,050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488,000	14,640
학교급식지원센터	7,433,000	222,99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126,93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